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중장기적 개선과제

배 득 종

연세대학교 교수

1. 서론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표이다. 이것은 불균형 성장을 위주로 하였던 과거의 발전모형을 탈피하여, 앞으로는 분권과 분산을 위주로 한 발전모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모형을 택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의 대내외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 국란(國難)을 겪었지만, 그 대신 경제적으로는 자유진영이란 울타리 속에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90년대 초 냉전체제의 붕괴로 전 세계가 무한경쟁에 접어들자, 블록경제 속 발전모형은 그 효과성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발전모형이 필요하게 되었고, 혁신과 균형발전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설되어 2005년 예산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특별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예산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이 스스로 성장과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재정을 운용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간여는 줄여나가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가 운용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균특의 효과성을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지만,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이미 몇 가

지 노정되고 있다. 특히 균형발전의 근본취지, 즉, 자립형 지방화를 완성하기에는 균특이 한계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한계점들을 개선해주어야 비로소 균특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균특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 재원규모가 불충분하므로, 절대적인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균특 운용에 있어서 지방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역혁신을 촉발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개선 과제들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 이들이 타당성 있는 주장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

균특회계는 2005년에 5.5조 원 규모로 출범하여 2006년에는 5.9조 원으로 전년대비 8.1%가 증가하였다. 2006년 예산기준으로 균특의 지역개발계정은 4.5조원 규모이고, 지역혁신계정은 1.4조원 규모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2003년의 제도구축기, 2004년의 정책개발기, 그리고 2005년부터는 정책실행기에 접어들어, 2006년 현재 성과확산기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표 1> 참조).

● <표 1> 그 동안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실적 ●

구 분		2003년 (제도구축기)	2004년 (정책개발기)	2005년 (정책실행기)
실 적	제도 구축	○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 평가체계 구축 ○ 5개년계획 수립	-
	정책 개발	○ 지방대학 육성 ○ 지역산업 진흥 ○ 산학협력 활성화 ○ 지역혁신체계 구축	○ 혁신클러스터 육성 ○ 낙후지역 개발 ○ 지역특구법 제정 ○ 대덕R&D특구법 제정 ○ 기업도시법 제정	○ 공공기관 이전방안 ○ 수도권 발전방안

구 분	2003년 (제도구축기)	2004년 (정책개발기)	2005년 (정책실행기)
주요 성과	○ 국가균형발전의 법적 기반 구축 ○ 국가균형발전추진 로드맵 작성 ○ 광역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 국가균형발전의 중기 마스터 플랜 수립 ○ 지역별 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 ○ 로드맵과제의 정책화 및 신규 사업 시행 (NURI, RIS시범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등)	○ 로드맵과제 정책화 완료 및 신규사업 시행 (대덕R&D특구,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신활력사업 등) ○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확정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이처럼 네 가지 단계를 거쳐 온 군특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이하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근간) 참조).

① 인재·기술·산업의 협력 활동 증대

산학협력 및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등에 힘입어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지방대 교수 충원, 기업과 대학간의 산학협력 연구 및 장비 공동활용, 애로기술 지도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다.

②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관계기관들의 업무량 감소

중앙행정기관이 부처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지역사업을 중앙부처 공동추진단을 통한 공동정책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자율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게 되자 중앙행정기관들의 업무부담도 경감하였다.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05.7) 군특회계 운영으로 사업선택 재량권이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81.3%,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52.4%에 달한다. 지자체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의견은 광역자치단체 75.0%, 기초자치단체 90.0% 이었다.

③ 지역 혁신활동의 다양화

지역혁신협의회(광역 14개, 기초 116개)와 지역혁신연구회(24개)가 운영되고 있다. Inno-Cafe(30개)와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41개) 등은 인적 교류·협력의 산실로서 자생적 포럼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신활력사업 등 지역사업의 경우에도 과거 관주도의 H/W개발에서 지역혁신체계에 기반한 S/W중심으로 바뀌었고, 민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액 중 지방의 비중은 2001년 51.7%, 2002년 55.3%, 2003년 56.9%로 커지고 있다.

④ 국민적 공감대 확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지지도는 동 계획 발표 전에는 찬성 58%, 반대 40%였으나, 발표 후인 2005년 6월의 조사에서는 찬성 68%, 반대 29%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균특을 더욱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균특 운영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균특이 “자립형 지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으로는, 1)지역간 자원배분모형의 개선, 2)기초자치단체의 자율편성권 강화, 3)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 중장기적 개선 과제로는 1)균특 회계 규모의 지속적 확대, 2)균특 구조의 단순화, 3)균특사업에 대한 사후적 평가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의 강화, 4)지역혁신 사업의 위험성을 감안한 “혁신예산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

단기 개선 과제들은 2007년 예산부터 상당 부분 보완될 계획으로 있다. 자원배분모형은 인구, 면적, 재정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대체된다. 현재는 광역시도까지만 총액 신청한도가 설정되고 있는데, 2007년 예산부터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총액 신청한도가 배분될 예정이다.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는 2006년 현재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반해 중장기 과제는 아직 고려할 여력이 없었는데, 그것은 균특 신설 초기부터 논란이 있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중장기 과제들

(1) 균특회계의 규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5년에 5.5조원 규모로 출범하여, 이후 매년 7%-9%씩 증가될 계획이다. 이런 균특에 대하여 1)규모가 영세하다는 지적과 2)증가율이 국고보조금의 증가율보다 낮다는 비판이 있다. 균특 신설 초기에는 첫 번째 비판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균특 규모의 증가율과 관련된 이슈가 더 커지고 있다.

균특 출범 당시 재원조달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 대부분 기존의 사업과 재원으로부터 이관 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개발계정의 재원은 낙후지역 개발 및 재해예방 등 국가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혁신적인 발명이나 신상품, 신시장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계정의 재원은 1.4조원으로서(2006년 예산), 균특회계 전체규모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규모의 재원과 사업들을 가지고 “자립형 지방화”를 추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균특이 균형발전의 레버리지가 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재원에 추가적으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적 최소한을 충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자립화를 도모할 수 있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중앙의 영향력이 큰 국고보조금을 상당수 폐지 또는 정비하여 지방교부세나 균특으로 편입시켰다. 지방교부세나 균특은 지방의 자율성을 허용하므로 재정분권이 향상되는 듯 하였다.¹⁾ 그러나 몇 년간의 시일이 지나면서, 국고보조금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그 증가율은 균특의 그것을 훨씬 상회하게 되었다 (물론 같은 기간 중 교부세율도 증가하기는 하였다.).

이처럼 균특 규모가 상대적으로 정체된 데에는 균특의 구조가 “주인의식”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소관 부처들이 일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운영해 왔다. 즉, 자신들이 소유한 사업이므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균특 사업

1) 그동안 특정보조금의 비중을 줄이고 일반보조금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이는 일반보조금제도가 특정보조금제도에 비하여 더 효율적이라는 국내외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다(김정훈, 2001; Bahl, 1999; Inman, 1979).

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예산처, 관련 중앙행정기관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 대하여 누가 주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특히 사업에 비효율이 생기면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정책 환경 때문에 중앙행정기관들이 균특 사업의 예산 확충에 적극적인 유인이 줄어들어서 균특의 증액이 제약되고 있다.

(2) 균특 구조의 단순화

세계 각국의 지방재정제도를 오랫동안 분석한 Bahl(1999)은 지방재정이전제도가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제 집행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Bahl은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설계요건 12개 중 하나로 단순화를 언급하였다.²⁾ 그러나 현재의 균특은 단순 설계와는 거리가 있다.

지역혁신계정에 대해서는 부처별 Top-down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지역개발계정에 대해서는 광역시도별 Top-down 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같은 지역개발계정 중에서도 자치단체의 자율편성사업과 국가 직접재원배분 사업이 혼재하고 있다. 즉, 예산편성 절차가 한 회계 내에서도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사업특성별로 재원배분 방식을 특화시키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단순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단순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역개발계정의 자율편성 대상사업들에 대한 재원배분의 경우, 현행의 지방교부세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재원배분 간의 조정 또는 통합을 통해 예산배분 방식과 절차를 간소화 할 수도 있겠다.

지역개발계정의 광역시도별 Top-Down 예산제도도 하루 속히 기초단체별 Top-Down 예산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래야 중앙기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지는 3단계 예산 편성절차가 중앙기관-기초자치단체의 2단계 절차로 단순화 될 수 있다.

혁신계정 사업들의 경우, 이를 광역시도로 아예 이전을 하든지, 지역혁신 포괄보조금(block grant for regional innovation)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

2) 그는 다음 12가지 성공요건들을 제안하고 있다. ①지방자율성 원칙 확립, ②기능이양 우선, ③중앙의 모니터링과 평가, ④다양한 보조 제도의 혼합과 활용, ⑤지방의 재정력 강화, ⑥자율화 원칙의 유지, ⑦단순화, ⑧분권개혁과 재원이양의 목표일치, ⑨중앙, 광역, 기초간의 조화, ⑩지방의 수지균형유지 의무화, ⑪지방재정제도의 가변성 인정, ⑫재정분권 옹호자의 발굴 및 유지.

혁신 포괄보조금이란, 사업예산을 현행의 지방교부세처럼 광역시도에 배분하되, 사용 목적을 혁신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개발계정에 대한 포괄보조금의 범위 축소 필요성

현재 지역개발계정은 포괄보조금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계정 안에 모두 111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포괄의 정도가 너무 넓어 사업을 포괄적으로 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지역개발계정의 디자인에 참고한 미국의 지역개발보조금(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의 경우, 약 7개의 단위사업을 갖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관할 중앙부처도 1개이다. 즉, 단일한 부처가 수행하는 단위사업들 간에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군특은 너무 다양한 사업들이 하나의 계정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관부처로 9개나 되어서 부처간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모니터링 하는 문제와 사업성과평가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문제들이 상존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 중 하나는 지역개발계정 사업을 몇 개 작은 포괄보조금들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문화포괄보조금, 재해방지포괄보조금 식으로 여러 개의 하위 포괄보조금을 묶어서 지역개발계정으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4) 지역혁신계정에 대한 혁신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혁신(innovation)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발명(invention)이 있어야 한다.³⁾ 또는 발명에 버금갈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블루 오션(Blue Ocean)을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 작업은 일단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성공가능성은 발명의 그것처럼 매우 낮은 편이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에서도 벤처기업의 성공률이 5% 미만이다.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상업성도 있을 것 같아서 투자자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데 성공한 벤처기업들도 이 정도의 성공률 밖에 못 올린다. 그런데 기획능력과 개발능력이 부족한 지역

3) 혁신은 단순히 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산”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에서 구상한 혁신 사업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나 지역혁신계획들 어디에도 이런 낮은 성공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사업들의 높은 실패가능성에 대한 대비 조치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역혁신계정의 사업들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실패할 권리”도 인정해주는 혁신예산(innovation budget)이 되어야 한다.

지식경영을 강조한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성공적인 민간기업의 CEO는 500 페이지 짜리 정규예산서보다 5 페이지 짜리 혁신예산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혁신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비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중 일부만 성공하여도 그 기업의 미래 생존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패를 용인하면서라도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중국에는 성공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민간의 혁신예산제도와 비교하여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실패가능성에 대한 특별 배려가 없기 때문에 모험과 혁신 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종의 기업이 정신을 혁신사업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5) 균특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인센티브 강화

균특과 관련하여 가장 큰 우려 사항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는 등 정책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경우에도 균특 자체가 존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특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적” 평가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사업시행의 결과 그것이 국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균특의 존재이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균특사업들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아직은 균특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후적 평가제도에 관한 관심이 적은 상태이나, 이 제도는 조만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제도를 마련함과 함께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도를 강화

하여야 한다. 이런 인센티브 재원으로 2006년에는 총 100억원이 배정되었고, 2007년부터는 그 규모를 300억원-500억원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 인센티브 재원규모를 총 재원의 2%-3%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균형발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필요성

유명한 정치학자 라스웰(Harold Lasswell)은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얻는가”(Who gets what and how?)라고 정의하였듯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자원배분권한의 향배도 변화시켰다.

우선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권한을 얻게 된 것은 광역 시도이다. 군특에서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중앙부처에 대한 예산신청(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신청주의를 채택한 결과, 시도지사가 신청하는 예산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군특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부각되었고, 그 결과 시도지사가 관내 각 지역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증대되었다.

이에 반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군특이 도입되었다 해서 사업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은 향상된 것이 별로 없다. 과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했었다면, 이제는 광역 시도가 그것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Weist(2002)에 의하면, 바람직한 지방재정이전제도는 정부와 시민이 접촉하는 일선기관에서 의사결정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군특은 그 의사결정의 핵심적 주체가 광역시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의사결정의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이었던 점에 비하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주민생활과 접점을 이루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것이다.

4. 결 론

현실과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차이가 현저하게 클 때는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도 표방한 이념과 현실적인 집행수단 간의 차이가 큰 편이다. 군특이 표방하는 “자립형 지방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정부

와 정권이라도 추구해야할 가치이다. 그렇지만 현재 균특의 사업내용을 보면, 자립형 지방화를 추구하기에는 매우 빈약하고, 오히려 국가적 최소한을 충족시키는 역할에 국한되고 있다. 지역혁신계정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과거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와 차별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균특을 통해 광역시도의 역할이 예전보다 커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런 자율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의 기획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짧은 시일내에 갖춰지기가 어렵다. 증가된 자율성을 고도화된 기획력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균특 사업들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불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려하여, 본 글에서는 상기의 몇 가지 중장기 과제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균특과 관련하여 중장기 시각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아직은 새 제도에 적응하기 바쁘기 때문이다. 조만간 학계 뿐 아니라 실무진과 주민단체에서도 균특을 중장기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연구와 토론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체계 및 발전방안」, 2005.1.
-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분야 공개토론회 자료」, 2005.3.
-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6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2005.4.
-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6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5.10.
- 기획예산처,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
- 기획예산처,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 김성철,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혁신예산제도의 사례분석」, 사회과학논총 13:2, 1997.
- 김정훈, 「외국의 국고보조금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5.
- 김정훈, 「국고보조금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
- 노기성, 「지방재정 지원 현황과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4.
-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과제와 산업자원부 주요 균형발전시책」, 2005.9.
- 산업자원부, 「05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총괄편」, 2005.3.

- 이창균, 「3대 특별법 제정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지방재정세미나, 2004
- Bahl, R. Implementation Rule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working paper 99-1, Georgia State Univ. 1999.
- Inman, R.P. The Feder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Current Issues in Urban Economics, ed. Mieszkowski and Straszheim,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 Weist, D. Decentralization and Public Expenditure Analysis and Management, mimeo, 2002, World Bank.

